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806

발의연월일: 2025. 3. 11.

발 의 자:김선교·서천호·김상훈

김위상 • 구자근 • 박덕흠

강대식 · 김성원 · 최수진

서일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부터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의 면적은 도리 어 넓어지고 있고 그 실정도 정확히 파악되기 어려운 상황임.

1974년 개정 소득세법으로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항을 신설한 이래 육농정책의 하나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계속 유지되어 왔음.

그러나 임차농이 많은 현실에서 실제 경작자에게는 이러한 조세 감면의 혜택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고, 자경 8년시 양도세 감면혜택이 지주들의 탈법책으로 악용되어 친환경 농업인증 취소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농업을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육성하고 환경친화

적인 농업정책의 제도적 추진을 위하여 1997년 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르고 있으며, 정부도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통해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을 확대하는 목표를 세우고 각종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오히려 친환경 농업 경지 면적과 농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친환경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자경농지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에 대해서도 양도세 감면 특례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친환경직불금이 전체 친환경농업 인증 농지면적 대비 절반도 채 지불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적극타개하고,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삼고자 함. (안 제69조의5 신설 및 제133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5(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소유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 은 사업자로 하여금 그 인증에 따라 유기농산물 또는 무농약농산물을 계속 재배하게 할 목적으로 10년 이상 임대하였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9조의4"를 "제69조의5"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9조의4"를 "제69조의5"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 <u><신 설></u>	재 정 안 제69조의5(친환경농산물 재배농 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의 소유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 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업자로 하여금 그 인증에 따라 유기농산물 또는 무농약농 산물을 계속 재배하게 할 목적 으로 10년 이상 임대하였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양도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도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감면의 종합한도) ①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u>제69</u> 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u>제69</u> <u>조의5</u>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 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 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 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 한다.

-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2. (생략)
- ②·③ (생 략)

1
제69조의5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혀해과 같음)